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74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김재원·황운하·정춘생

박지원 · 김준형 · 박은정

김선민・차규근・강경숙

박홍배 • 신장식 • 서왕진

백선희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 보수 결정의 원칙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 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경우, 직무 수행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보수가 그대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탄핵소추 의결 등 권한 행사가 정지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보수를 전액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공무원의 보수가 직무 수행 실태와 부합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7조의2신설).

법률 제 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 (권한행사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일괄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수의 전액 감액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당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47조의2(권한행사가 정지된 공
	무원의 보수) 탄핵소추의 의결
	을 받아 권한 행사가 정지된
	자는 그 기간동안 보수 전액을
	감한다. 단, 헌법재판소의 결정
	으로 탄핵이 취소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할 수 있
	<u>다.</u>